

의안번호	2220433
의 퇴 인	권영세 의원
회 답 일	2026. 8. 10.
추 계 번호	26F39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 등은 2028년 0.03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총 0.09억원(연평균 0.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0년, 증여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21조의27)	0.03	0.03	0.03	0.09	0.0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27 (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－ 적용요건: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고, 주주 등이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경우 － 적용대상: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1조의27 (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7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-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(안 제121조의27)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

- 사업재편 과정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고, 이에 따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세특례
 - 사업재편은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의미하며,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음
 - 모회사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
 - 자회사(양도대상법인)는 채무 인수·변제로 발생한 채무감소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, 이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
 -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
 - ※ 사업재편제도는 세제 지원 외에도 R&D, 금융,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승인 기업에 제공하고 있음¹⁾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
1) 산업통상부, 「사업재편 지원제도 활용 가이드」, 2026

□ (추계방법)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0.03억원
 - － 동기간 감면실적이 낮은 것은 사업재편 승인유형이 대부분 신산업 진출에 해당하여, 채무 인수·변제의 활용도가 낮은 영향으로 보임

[표 2]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채무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증여세·법인세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증여세	0	0	0	0	0
법인세	0.1	0.01	0.02	0	0.01
계	0.1	0.01	0.02	0	0.01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[표 3]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연도별 승인유형

(단위: 개)

승인유형	승인연도		기업규모			합계
	2016~2019	2020~2024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합계	109	421	11	83	436	530
－과잉공급 해소	109	6	7	12	96	115
－신산업 진출	0	404	4	71	329	404
－기타	0	11	0	0	11	11

자료: 주지환(2025)²⁾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 등은 2028년 0.03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총 0.09억원(연평균 0.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0년, 증여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21조의27)	0.03	0.03	0.03	0.09	0.03

2) 주지환,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, 「산업경제이슈」 187호, 산업연구원, 2025.7.14.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